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 출 일 : 2026. 8. 3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이견,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안 제10조)
-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제72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도 실무협의기구의 협의·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 부칙)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6. 7. 8. ~ 7. 9.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대상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6. 7. 13. ~ 8. 3.(21일 간)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제4항 중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로, 제5항 중 “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면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제70조(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이하 “실무협의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실무협의기구 구성) ① 실무협의기구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부시장을 포함하여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기구의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③ 실무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2조(실무협의기구의 운영) ① 사업시행자, 추진위원회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실무협의기구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라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관계 부서 및 참석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른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협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②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른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협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안건 상정 요청서	
정비구역명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추진위원회, 부서명)	(전화:)
관련부서 (협의를 필요한 부서)	
주요 내용	
신청인 희망 의견	
<p>「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 기구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 양 주 시 장 귀하</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 ③ (생략)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u>토지등소유자</u> 는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를 받 고자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이 번 호 부여한 <u>동의서</u> 로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④ ----- ----- <u>토지등소유자</u> <u>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u> <u>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u> <u>회”라 한다)</u> ----- ----- ----- ----- <u>서면동의서 또는 전자</u> <u>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u> <u>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u> <u>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u> <u>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u> <u>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신 설>	⑤ <u>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u> <u>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u> <u>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u>			
제10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0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 -----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의2 호서식으로 한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 및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 해제)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

⑤ -----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면 동의서-----.

⑥ 제5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 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2. (생략)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추진위원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장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제70조(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이하 “실무협의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실무협의기구 구성) ① 실무협의기구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부시장을 포함하여 안전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기구의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③ 실무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2조(실무협의기구의 운영) ① 사업시행자, 추진위원회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실무협의기구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안전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안전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전, 일시 및 장소 등을 관계 부서 및 참석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32)

1. 도시재생과-9436(2026. 7. 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남양032) 1부. 끝.

여 성 아 동 과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담당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2026. 7. 9.
배진위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0922 (2026. 7. 9.) 접수 도시재생과-9465 (2026. 7. 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3965 팩스번호 031-6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32			
정 책 명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명	김영호	전화번호	031-590-87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7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재생과)	○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전자서명동의서 적용기준 명확화 ○ 부서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도시재생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30)

도시재생과-9440(2026. 7. 9.)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직부패로영

주무관	송호필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팀장	대결 2026. 7. 9. 박호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7788	(2026. 7. 9.)	접수	도시재생과-9482	(2026. 7. 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4719	팩스번호	031-690-2079	/ rims@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30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도시재생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시설6급 김영효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9.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div>2026년 7월 9일</div> <div>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div> <div>(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div> <div>도시재생과장 귀하</div>			

붙임4 규제심사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도시재생과-9441(2026. 7. 9.)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하고,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홍기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6. 7. 9.
협조자				이봉규	
시행	의회법무과-8176	(2026. 7. 9.)	접수	도시재생과-9489	(2026. 7. 10.)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법무과 (금곡동)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7320	팩스번호	031-690-2900	/ hj1235@korea.kr	/ 비공개(6)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1. 도시재생과-9602(2026.7.13.)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제명 :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3. ~ 2026. 8. 3.(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개정 조례안 발의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김선벽**

도시정비1팀장 **안어진**

도시재생과장 **한영오**

미래도시추진 전담 2026. 8. 4.
단장 **양기영**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상현

시행 도시재생과-10812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4층 도시재생과 (공직용)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69 팩스번호 031-590-8653 / kshpro777@korea.kr / 대국민 공개